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 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1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‘충청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’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, 구성, 평가단장, 평가단원의 관리,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)
- 시·군 위험도 평가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 및 제11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이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,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시·군이 운영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던 것을 충청북도가 직접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현행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,
  -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 -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4조는 평가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5조, 제6조 및 제7조는 평가단원의 관리, 교육·훈련,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8조 및 제9조는 시·군 위험도 평가 지원 및 평가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10조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1조는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, 조례내용의 정당성과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고,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2. 11. 23.~'22. 11. 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, “특이한 사항”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른 충청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,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추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합 규정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